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선배 ·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□ 안녕하십니까?

국민의힘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최민규 의원입니다.

지금부터 「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

-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맨홀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기존의 일시적인 정책 대응을 넘어 명확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기에 「자연재해 대책법」에 따른 내수재해 위험지구를 중심으로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

□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,

- 하수관로 유지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제7조의 제목을 (하수관로 준설 등)에서 (하수관로 점검 등)으로 변경하고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른 내수재해 위험지구 내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, 그 외 침수 우려 지역 등에 대해서도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-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